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월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11월판

인적자본의 우선순위 지정 - 당면과제와 이사회의 역할

- ▶ 많은 기업의 이사회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노동자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조치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및 노동자에 대한 기대가 혁신적으로 변화됐고, 이는 다양한 인적 자본 리스크와 이사회 논의의 기회를 높이고 있음
- ▶ ESG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대부분의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관련 문제—문화, 목적, 하이브리드 근무, 미래의 업무방식, 웰빙(well-being), 기술 격차, 자동화, 사회적 기대치의 변화와 같은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이 이사회 안건에서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음
- ▶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통계 변화, 기대치 변화, 디지털 전환, 인재경쟁 심화, 승계 계획 등이 일상적인 이사회 논의의 일부가 되고 있음
- ▶ 미국 100대 고용주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는 임금, 보상, 복리후생, 직업안정성, 건강 및 안전, 학습 및 교육, 고용 및 노동형태 등에서 대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주요 시사점:
 - 일반적으로 C-레벨 경영진은 광범위한 인력 관련 문제가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력 리스크에 대한 완전하고 통합된 관점이나 예방적이거나 총체적인 접근방식은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응답 조직은 인력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총체적인 정의가 없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채널 이외의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제도적 지식이나 조정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3년 간 소속 조직이 인력 리스크의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 응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력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 보상위원회 명칭이 인적 자본, 인적 자원, 인재 및 경영개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 "문화 및 보상", "인재문화 및 보상", "인재 리더십 및 보상", "인적자본 및 보상", "조직발전 및 보상"과 같은 새로운 이름을 사용함
 - 인력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성숙도가 높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지표에서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자체 보고할 수 있음

다운로드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US
인적자본의 우선순위 지정 - 당면과제와 이사회의 역할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내 위원회

- ESG의 범주 하에 기업의 효과적 관리가 기대되는 이슈들이 점점 진화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감독 역할의 의미와 감독 효과를 유지·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중임
- 이를 위해 이사회는 위원회 구조와 관행을 검토하여 이사회의 확장 및 변화되는 책임과 우선순위의 적정성, 신규 위원회 설치, 위원회 규정 개정, 이사회와 위원회 전체에 걸친 감독 위임의 재할당 또는 회의형식 변경이 필요한지 등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고려해야 함
- 본 보고서는 2022년 5월, 180여개의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의 결과를 통해 이사회 위원회 구조, 구성 및 지난 1년간의 변화를 파악함
- 서베이 주요 결과
 -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ies)*, 고문변호사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상장법인을 대표함
*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기업 법무 및 주주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 응답자의 13%만이 신규 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정보기술위원회가 가장 많았음
 - 응답자의 55%는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책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68%는 유기적으로 발생한 이사회 구성의 변화를 보고했고, 전체 응답자의 30%는 유기적 변화 외에도 위원회의 담당 책임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한 명 이상의 신규 이사를 확보했거나 물색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정치기부금, 주주제안 및 주주활동에 대한 일차적인 감독 책임은 추천위원회 및 거버넌스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됨
 - 대형 상장법인의 55%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나, 중형 상장법인의 78%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45%는 신규 선임된 위원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대형 상장법인의 39%와 중형 상장법인의 27%는 이사회가 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비의무적 정책이나 관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Global, 2022년 11월 Deloitte Insights 편집국

2022 기후행동 점검: COP27에 앞서 기후행동에 대한 재계의 인식을 점검한다

- ▶ 전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기, 치솟는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출렁이고 있으며, 각각의 사태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성 행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 딜로이트는 COP27을 앞두고 기업 리더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행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2 기후행동 점검 서베이는 2022년 8~9월 글로벌 기업 고위 경영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해 경영진이 가장 우려하는 점, 각 기업이 취하고 있는 기후행동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인식과 행동간 간극 등에 대해 살펴봄
- ▶ 주요 내용 요약
 - 낙관론 우세: 응답자의 75%는 COP27에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고, 87%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응답함
 - 향후 1년간 '지속가능성 노력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육박했으나,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사태 등 외부 요인들이 기업의 일부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됨
 - 정부 지원에 대해 엇갈린 의견으로, 응답자의 55%는 새로운 정부 규제와 정책을 지지했으며, 정부가 현행 규제와 정책 이행을 우선시하기를 바라는 응답자는 27%에 그침
 - 대부분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시키거나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한다고 답하여, 완화와 적응 전략을 수행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69% 및 68%에 달했으나, 일부 산업은 뒤처지는 양상을 보임
 - 기후변화 관련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안으로는 기후 안보 위험을 꼽았으며,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와 공정전환(Just Transition) 또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꼽힘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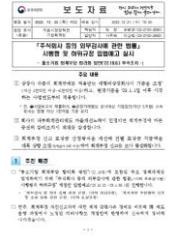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2 (목) 금융감독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22.12.22.~'23.1.30.) 실시를 발표함
- ▶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현행	개선
①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1천억 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 위원회 설치 의무 등)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 단, 다음의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자산 5조 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 원 기준 유지
②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
④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완화(과징금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수준의 포상금 규모로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완화와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현재보다 5배 이상)를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

-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15 (목)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이하, "KSSB")를 설립함
- 국내외 추진배경

다운로드



QR 코드



배경

추진현황

국제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은 '21.1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있음 * '22.3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23. 상반기 최종 기준 공표 예정 → 생물다양성 등 다른 E 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시행('24.1.1),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초안 발표('22.5) 미국: 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 발표('22.3) →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제안 (최종안은 미정)
국내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 * ('25~)일정 규모(예: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중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기준 및 대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현재 국내 기업은 국제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계속 ESG 공시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ESG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 내 KSSB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 시 한국 측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 등 당국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ESG 공시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KSSB 설립을 통해 ESG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전문기구 신설:** 환경,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 확대 개편 및 향후 산업별 전문위원회 신설·운영 예정
 -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중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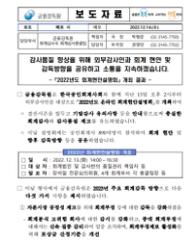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14 (수) 금융감독원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인과 회계 현안 및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 12월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함
- ▶ 결산시즌을 앞두고 기말감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충실한 회계감사와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함
- ▶ 설명회에는 공인회계사 890여명이 참석하여 회계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 등을 공유함
- ▶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2023년 주요 회계감독 방향 5가지

다운로드



QR 코드



설명회 자료



회계감독 방향	내용
①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회계부정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신속·집중 감리하여 엄중 조치 • 회계부정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
② 감사품질 중심으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시행되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 •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에 적극 활용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엄정 조치
③ 사전예방 중심의 발빠른 회계감독 시스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 • 이슈별 표본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집중적·효율적으로 심사 •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적 피드백을 기업·감사인에게 제공
④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회계감독 제도·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지정제도 합리화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 • 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
⑤ 기업·정보이용자와 현장 밀착형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회계 아젠다를 지속 발굴하여 감독지침을 마련 • 외부 공개되는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기업의 회계오류 예방 및 정보이용자의 감시활동을 지원

-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등과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5 (월)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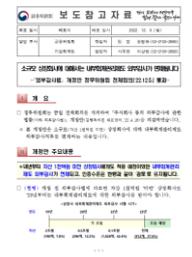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 ▶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 본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임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 (현행)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도 20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연도	'19년	'20년	'22년	'23년
	기 도입			도입 예정
자산	2조 원 (190개, 7.8%)	0.5조 원 (296개, 12.2%)	0.1조 원 (1,028개, 42.4%)	전체 (912개, 37.6%)

- (개정)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됨.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 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함
 - ※ '검토'와 '감사'의 차이: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내부통제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 ▶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① 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백만 원, 1회성)과 ②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회사당 40~46백만 원, 매년) 절감이 예상됨
-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 (금) 행정안전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 정부는 12월 2일(금)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였음

* 1차 회의(11.18.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2차 회의(11.2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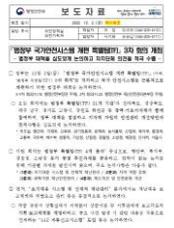
▶ 범정부 특별팀(TF) 4개 분과 중심으로,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킴

▶ 주요 논의사항

주제	내용
①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 • 현장 대응 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개선하는 방안 논의 •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발굴하여 지침(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
② 지역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방안도 논의 •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 논의
③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정전 등 외부장애에 대비하여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논의 •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④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하여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 이번 범정부 특별팀(TF)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1.29 (화) 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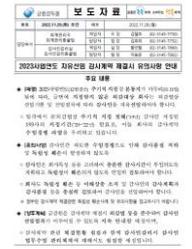
- ▶ 2023사업연도(12월 결산) 주기적지정등본통지가 마무리(11.11)됨에 따라, 금번에 지정 받지 않은 외부감사법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함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등(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23.1.2 까지, 그 외 외부감사대상회사: '23.2.14 까지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

- ▶ 감사인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다운로드



QR 코드



	감사인	회사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감사 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험에 대해 면밀히 검토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문서화 및 회사에 제시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독립성 훼손위험을 철저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선임 관련 준수사항 문서화 및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 후 재무제표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시간·인력·계획·품질(전문성) 등을 검토 및 문서화 감사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문서화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회계법인-B사 자문용역 수행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22.11: 보험계약기준서(IFRS 17, '23년 시행)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 수행 ✓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C회계법인-D사 구축용역 수행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22.10: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수행 ✓ '23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째 외부감사계약 체결 <p>→ 감사계약 체결 관련 독립성 훼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사-F회계법인 구축용역 수행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F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검토시, 해당 비감사업무가 감사업무와 병행이 금지된 업무인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적격 감사인(F회계법인)을 선임 <p>→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 훼손</p>

- ▶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외부감사법 제10조 등)

선정기준과 절차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인 선임보고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시간·인력·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회의내용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에 대한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전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보고서 제출 후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 준수여부 확인

-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부감사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축구는 잘 하는데, 지배구조는 아시아 최하위권인 이유? [비즈니스워치]
- 연임 고사하는 금융권 사외이사 늘어난다 [연합인포맥스]
- ESG 평가시장 투명성 제고 위한 가이드선 마련해야 [연합뉴스]
- 국내 대기업, 글로벌 ESG 평가 대응 미흡, 왜? [이코리아]
- 국내 기업 24곳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 편입 [동아일보]
- 제약 바이오 업계, ESG 경영 평가 희비... 바이오기업 상위점 받아 [여성소비자신문]



이사회·감사위원회

- 미흡한 주주 배려...기업 70% 주총 2주 전 통보 [이데일리]
- 상장사 이사회 주요 현안, 올해도 'ESG' [조세일보]
- 기업들 이사회 중심 경영 확산, 헤드헌팅 회사 이사회 서비스 본격 확대 [비즈니스포스트]
-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38명 늘어... 이사회 다양성 확보 첫발 [여성신문]
- 은행 상임감사,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싹쓸이 [신아일보]
- 이사회 내 여성 이사 선임한 기업 비중 올해 첫 50% 넘겨 [연합인포맥스]
- 집중투표 배제에 집중하는 대형 상장사들 [비즈니스워치]



한국 딜로이트 그룹

- 스포츠이 이끄는 VCC 마케팅, 한국 딜로이트 그룹 「VCC 마케팅 2022」 리포트 발표 [매드타임즈]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모니터 딜로이트' 韓 시장 출범 [ZD넷코리아]
- 스마트시티 재도약의 전제는 5G로의 완전한 이행 [스마트시티투데이]
- [ESG 커넥트포럼] 딜로이트 안진 "공급망의 ESG 관리도 중요" [뉴스트리]
- 한국 딜로이트, 여성 영리더 승진자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 미국, 중국 넘어 아시아와 디커플링? 반도체는 어렵다 [이코노미조선]
- 「홀리데이 리테일 서베이 2022」 국문본 발간, 물가상승에도 지갑은 열린다 [메트로신문]
- 한국딜로이트그룹, 소외 아동·청소년 위한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후원 [헤럴드경제]
- 한국딜로이트그룹, 「딜로이트 인사이트 24호: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발행 [매드타임즈]
- 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 감사투명대상 외부감사인 부문상 [한경닷컴]
- 글로벌 시스템으로 품질 향상 총력 회계감사 전문성·투명성 크게 높여 [매일경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한공회, 2030 비전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 선포 [한국세정신문]
- 유통량 금과옥조... 코인 발행사, 투명성 높인다 [이데일리]
- ESG 경영 강조 시점서 터진 악재, 의료산업 전반 인식 제고 필요 [의학신문]
- 내년 네이버·쿠팡·카카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 보고 [연합뉴스]



부정행위방지

- 금감원, 내년 회계부정 감독 강화하겠다 [조세일보]
- 전세계 소비자의 21%, 개인정보 유출 기업 이용 안한다 [보안뉴스]
- 레버리지로 파산하는 알트코인과 거래소... 경영진 견제감시장치 없다 [한경 코알라]
- 불붙는 가상자산 규제... 'FTX 사태' 재발방지책, 금융당국 규제체제 정립해야 [머니S]
-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이유 [비즈한국]



규제 동향

- '감사인 지정제' 완화 추진...자유 선임기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 유력 [조선일보]
-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이투데이]
- 회계개혁 성과 놓고 재계·회계업계 팽팽하게 대립 [내일신문]
- 감사인 등록제 도입 후... 회계법인 '부익부 빈익빈' [한경닷컴]
- 법인세 인하 혜택, 도입 시 103개 기업에 집중 [연합인포맥스]
- 3년만에 시작된 '회계대전'... 금감원 과도한 경쟁 자제 당부 [머니투데이]
- 자산 1천 억 원 미만 상장기업, 외부감사 면제된다 [뉴시스]
- 외부감사 강제 교체..."회계 투명성 높였다" VS "부작용만 키웠다" [한경닷컴]
- 美 PCAOB, 뉴욕증시 상장 중소기업 회계감사 자료 모두 제공받아 [뉴스핌]
-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감사계약조건' 마련 [뉴스원]



M&A

- M&A가 살길... 제약·바이오업계 '빅딜' 본격화 [조선비즈]
- NH투자증권, 리테일총괄 신설·M&A조직 확대 [아시아경제]
- '사업 다각화' 속도내는 종합상사... M&A·신사업 구축 박차 [이데일리]
- 국내 재계 순위 지각변동 예고... M&A가 변수 [뉴스핌]
- 올해 제약업계 최대 M&A... 美 암젠, 36조에 호라이즌 인수 [아시아경제]

IV. 주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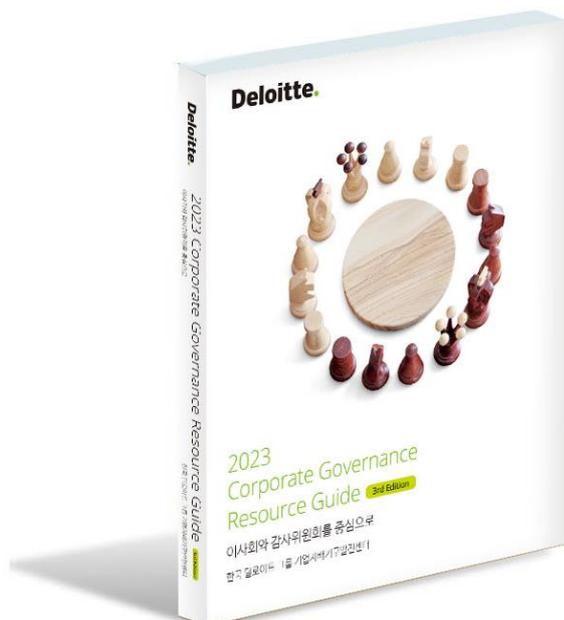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12월 27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선진 프레임워크와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모아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개정판(3rd Edition)을 발간함
-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는 1장 '기업지배구조', 2장 '이사회', 3장 '감사위원회'로 구성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본 개정판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발전 방향을 고려하고 계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본서는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인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감수를 통해 완성도를 높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무료 제공)
 - ※ 배포부수 제한으로 선착순 접수에 한하여 제공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2 웨비나 개최 결과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 14:00 ~ 16:00
장소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다시보기 (클릭 시 이동)

다시보기

QR 코드



➤ 2022 웨비나 시간표 안내

시간	내용	연사
오후 1:55~2:00 (05분)	참석자 안내	사회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오후 2:00~2:05 (05분)	인사말씀	Audit & Assurance 본부 장수재 본부장
오후 2:05~2:20 (15분)	세션 1.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동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오후 2:20~2:55 (35분)	세션 2. 현행 회계감독기구에 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오후 2:55~3:05 (10분)	Break Time	
오후 3:05~3:25 (20분)	세션 3. 자금사고방지 현황과 대응방향	Transformation & Analytics 이승영 수석위원
오후 3:25~3:45 (20분)	세션 4.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리스크자문본부 채수완 이사
오후 3:45~4:00 (15분)	Q&A / Closing	세션 강연자

- 이번 웨비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아젠다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세션을 선보임

IV. 주요 행사

➤ 세션 1.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 최근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실시한 서베이 및 인터뷰의 주요 결과 중심으로 설명함
- 글로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동향에 대한 설명 및 시사점을 제시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 딜로이트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소개: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사회·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함

➤ 세션 2. 현행 회계감독기구에 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 회계 감독과 위원회 운영 및 결정 과정을 설명함
- 회계감독과 재무보고품질 (Financial Reporting Quality), 재무보고 리스크, 회계감리와 제재,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재무보고 리스크에 대한 대응 사례 소개 및 시사점 공유를 통해 회계 감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

➤ 세션 3. 자금사고방지 현황과 대응방향

- 최근 기업들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금사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 자금사고 실무사례(총계정원장테스트, 벤포드법칙, 가공의 거래처, 회계원장과 현금흐름 대사, 상대계정분석)를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사고를 진단 및 탐지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제시함

➤ 세션 4.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 최근 IT 시스템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
- Timing - 사후 점검 위주 감사 → 적시 인지 감사 :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음
- Prevention - 사후 개선 → 진단을 통한 예방 감사 : 사고가 발생하기 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분 조기 식별 및 예방 통제
- Self Digital Audit - 간접적 데이터 활용 → 직접적 디지털 감사 : IT 부서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감사 도구 제공
- 데이터 애널리틱스(Data Analytics) 기법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구축함으로써 부정, 내부통제 취약점과 자금사고 리스크 등을 진단하고 적시에 탐지할 수 있음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웹 세미나] 2023년 경제 전망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1월 18일 (수) 오전 0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리엄 더들리 (미국 경제학자, 前 뉴욕 연방준비은행 최고경영자) •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의 유명 경제학자, 前 대통령) • 아이라 칼리시 (딜로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 모데레이터: 라나 포루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Financial Times 부편집장, CNN 글로벌 경제 분석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의 과제는 계속해서 기업과 이사회에 역풍을 일으키고 있음 • 기술 및 노동력 부족, 계속되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에 이르기까지 이사회가 2023년의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복원력을 높일 것인지 고려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함 • 경제학자들은 2023년 전망 및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를 토의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해설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2월 28일 (수) ~ 2023년 1월 13일 (금) (기간 내 자유수강) 2시간 (기간 내 온라인 자유수강)
장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행사·설명회' → '신청내역 조회' 메뉴)
강사	한영회계법인 엄재용 파트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자금횡령 등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와 관련한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를 발간하였고, 실무 상의 이해를 돕고자 본 설명회를 개최함 • 재발 방지에 필요한 경영진의 의지, 회사의 관심과 노력 등 회사의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여 임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Consultant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hyunjihwan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